-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접수번호	38

2013. 6. 25.
서소문역사공원조성
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청 원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본동 731
김현기 외 607명

나. 소개의원 : 최강선 의원(민주당, 중구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13년 2월 8일

라. 회부일자 : 2013년 4월 29일

마. 상정결과 : 2013년 6월 25일
(제3차 회의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2. 청 원 요 지

○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국유지-94%, 시유지-3.8%)의 무상사용 허가와 역사문화 기념관 및 종교시설 건립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함.

○ 순교성지로서 한국근대사 발전에 기여한 서소문공원을 역사와 문화 및 종교가 담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서울시,

중구청, 천주교서울대교구가 함께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 석 수)

□ 청원개요

○ 청원취지

현재 중구 의주로 2가에 위치한 서소문 근린공원 일대는 조선후기 참수형을 집행하던 행형지로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참형을 당한 역사적인 장소임. 천주교 박해는 성리학 중심의 지배이념과 사회질서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사상을 요구한 천주교도를 탄압한 사건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음.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그 유적을 기념하기 위해 서소문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임.

○ 청원내용:

1) 현재 서소문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해 줄 것을 요청함.

2)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함.

3) 2010년에 코레일과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에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검토를 바람.

4) 본 사업은 국가적인 역사복원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인 중구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5) 사업의 취지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서울시,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순교성지로서 한국근대사 발전에 기여한 서소문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조성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무상사용허가와 국비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중앙부처와 서울시, 중구가 함께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토지(국유지 94%, 시유지 3.8%)의 무상사용은 중앙정부가 서소문 역사공원을 순교성지로 조성하는 취지를 인식하여 「국유재산법」 제16조제1항[1)]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51.3%)와 국토해양부(42.7%) 소관의 토지를

---

1)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94%)로 관리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유재산법」 제28조[2]를 근거로 중구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시행자인 중구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514억원은 독자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비 및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서소문 근린공원을 세계적인 순교성지로 조성할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의 관광자원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비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르면 관광자원개발(보조율 50%),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보조율 50%),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보조율은 사업수행의 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100%, 80%, 70%,

---

2)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50%, 40%, 30%, 20% 적용)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서소문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역사복원을 통한 세계적인 순교성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원조성 사무와 관련한 서울시의 푸른도시국, 순교성지조성 사무와 관련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토지의 무상사용 및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중구청이 공동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3일 서울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으며, 여기에서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결정되었음.

○ 5월 27일에는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장을 중심으로 공원조성과장, 문화정책과장(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장(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정과(행정협력팀장), 시설계획과장(도시계획국), 중구청 도심재생과장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되어 제1차 회의가 열렸음.

○ 서울시는 청원서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현재 사업취지를 인식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청원이 채택된다면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 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의견서 : 별 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푸른도시국)**

□ **처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채택 의견**

○ 서소문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는 것은 **역사복원을 통한 세계적인 순교성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원조성 사무와 관련한 서울시의 푸른도시국, 순교성지조성 사무와 관련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토지의 무상사용 및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중구청이 공동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서울시는 이 사업의 공동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음.

○ 이 TF팀은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장, 문화정책과장(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장(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정과(행정협력팀장), 시설계획과장(도시계획국), 중구청 도심재생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관부서를 정해야 할 것임.

○ 향후,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소유 토지의 무상사용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주관부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본 청원의 채택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38	접수년월일	2013. 2. 8.
청 원 인	김현기 외 607명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한솔마을 105-201)		
소개의원	최강선 의원 (민주통합당, 중구 제1선거구)		
건 명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서소문역사공원조성특별위원회		

《요 지》

○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국유지-94%,시유지-4%)의 **사용허가**와 역사문화 **기념관** 및 **종교시설 건립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순교성지**로서 **한국근대사 발전**에 **기여**한 **서소문공원을** 역사와 문화 및 종교가 담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서울시, 중구청, 천주교서울대교구가 함께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